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580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580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52721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1.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527210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같은 날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33,967,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23.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 제3423호로 공탁한 379,989,539원 중 333,967,2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2)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2) 원고에게 333,967,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2.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22. 2. 4. 체결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1. 11., 이자 연

18%(지급기일 매월 10일),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F의 대표이사 H와 그 배우자 E는 같은 날 보증채무 최고액 2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25. 11. 12.까지로 정하여 F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F, H 및 E는 같은 날 공증인 G에게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E는 2015.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6.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I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8. 28.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2021. 6.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J(대표자 사내이사 E, 이하 'J'이라 한다)으로, 채권최고액을 63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또한 E는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전세금을 1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21. 6. 18.부터 2023. 6.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22. 2.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2022. 2.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질권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는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에 청구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513,692,06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고양지원 K)을 하였고, 2022. 8.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3. 7. 19. M에게 350,880,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고양지원은 2023. 9. 13.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 고양시 덕양구에게 643,120원, 대한민국(고양세무서)에게 511,660원을 각 배당한 다음 피고 D에게 379,961,7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2023.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2670호 가처분결정(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근저당권등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다)이 있음을 이유로 고양지원 2023년 금 제3423호로 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D으로 하여 위 배당원리금 합계 379,989,53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28호증, 을다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주채무자인 F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현재까지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연대보증인인 E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인 2억 4,000만 원(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2016. 1. 11.까지 연 18%의 이율, 2016. 1. 12.부터 2016. 9. 17.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률로 각 계산한 돈을 합산하면 240,153,005원4) 이 되어 보증채무 최고액을 초과한다) 및 이에 대한 2016. 9. 18.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E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전득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는 재전득자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 이 사건 근질권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는바, E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재전득자인 피고들은 모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전득자인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고, 경매법원이 고양지원 2023년 금 제342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D으로 하여 배당원리금 합계 379,989,539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33,967,213원[= 보증채무 최고액 240,000,000원 + 지연손해금 93,967,213원(= $240,000,000\text{원} \times (7 + 304/3665)$), 2016. 9. 18.부터 2024. 7. 17.까지) $\times$ 연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전득자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공탁금 379,989,539원 중 333,967,2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967,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는 주채무자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리금 333,967,213원[= 보증채무 최고액 240,000,000원 + 보증채무 최고액에 달한 날(2016. 9. 17.)6)의 다음 날인 2016. 9. 18.부터 2024.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3,967,213원{= $240,000,000\text{원} \times (7 + 304/3667)$ } $\times$ 연 5%}]과 위 240,000,000원에 대한 2024.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주채무자인 F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소멸시효 5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주채무자인 F에 대하여 소송상 또는 소송 외로 이행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바(제1심 제3차 변론기일), 주채무자인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 변제기인 2016. 1. 11.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2. 9. 6.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E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으며, 권리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피고 D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F를 채무자로 하는 3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E를 채무자로 하는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는 한편, E가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N아파트 O호(이하 'N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고양지원 P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으며, F가 2018. 3. 27. 및 2018. 5. 11. 주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17 내지 25호증, 을다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주채무자인 F 및 연대보증인인 E를 상대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사실, ② F의 대표이사인 H는 2018. 3. 27. 'Q 대금 결재 입금 시(189,000,000원) 대출금 상환으로 우선 100,000,000원으로 안양건물(R)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89,000,000원은 대출금 상환 후 40,000,000원을 재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또한 F 및 H는 2018. 5. 11. '고양지원 2018타채45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인 주식회사 S, T으로부터 위 압류추심금을 받는 즉시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7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주식회사 Q으로부터 미지급 잔금 189,130,000원을 6월말까지 해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위 ③항 기재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직후인 2018. 5. 14. 위 법원에 고양지원 2018타채45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8) 에 비추어 보면, F의 주채무는 F를 채무자로 하는 위 각 압류(단, 집행해제된 고양지원 2018타채45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외) 또는 위 각 이행각서 작성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양지원 2018타채41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	Q 주식회사	287,417,301	2018. 4. 18.
고양지원 2018타채45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	주식회사 S, T	287,524,931	2018. 4. 25.
고양지원 2021타채18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F	8개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	390,275,104	2021. 5. 4.
고양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	E	-	240,000,000	2018. 4. 17.
고양지원 2018타채47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	U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40,000,000	2018. 5. 9.
고양지원 2019타채50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	9개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	220,000,000	2019. 6. 28.

4) 원고는 위 각 압류 및 채무승인 시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인 2022.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D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7, 8, 28, 47, 45, 53호증, 을다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2. 16.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4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1. 2. 22. 전세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또한 V은 2021. 5.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 B는 2021. 6. 15. J과 사이에 425,000,000원을 이율 연 9.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21. 6. 18.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1)항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직후 같은 날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63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전세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21. 7. 6. 위 (1)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주식회사 W의 질권설정등기가 연이어 말소되었다. 그 후 2021. 7. 14.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주식회사 W의 질권설정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4) E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21. 6. 18.을 기준으로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추정되므로, 당시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소극재산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을 기초로 평가하고, V, X의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이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무액의 150%로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추정한 액수(각 133,333,333원, 원 미만 버림)를 기초로 평가한다.] 9) 10)

이 사건 아파트	500,000,000원 내지 525,000,000원	피고 B의 2021. 2. 1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피고 B의 2021. 2. 16.자 전세권V의 2021. 5.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출원금 425,00,000원(채권최고액 495,000,000원)전세금 10,000,000원추정액 133,333,333원(채권최고액 200,000,000원)
2021. 7. 27. 기준N 아파트	감정평가액 980,000,000원 내지 995,000,000원	피고 C의 2021. 5. 2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피고 B의 2021. 1. 28.자 전세권X의 2021. 5. 26.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주식회사 AC의 2021. 7. 16.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고양지원 AD) 관련 채무주식회사 AE의 서울동부지법 2021차전22725 양수금 사건의 2021. 8. 30.자 지급명령 관련 보증채무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대출원금 720,000,000원(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전세금 10,000,000원추정액 133,333,333원(채권최고액 200,000,000원)청구금액 17,387,838원 및 원고 주장 추가 이자 41,034원청구금액 24,848,129원(원고 주장 금액 24,176,267원)최고액 240,000,000원 및 2016. 9. 18.부터 2021. 6. 17.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7,008,219원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B의 기존 2021. 2. 22.자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0,000,000원) 및 V의 2021. 5.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00,000원)가 연이어 말소된 직후 같은 날에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37,500,000원)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0,000,000원)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2021. 7. 6. 피고 B의 기존 2021.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95,000,000원) 및 그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주식회사 W의 질권설정등기가 연이어 말소되었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인 점, 종전의 주요 근저당권자와 이 사건 근저당권자가 피고 B로 동일하고,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다른 권리변동은 없는 점,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산액이 695,000,000원(= 피고 B의 근저당권 495,000,000 + V의 근저당권 200,000,000원)인 반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보다 적은 637,000,000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E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¹¹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 D이 직접 대출을 실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등의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to-Income),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to-Value ratio)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 D이 대출을 하는 것이면서도 중간에 형식적으로 피고 C라는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매출은 물론 변제능력이 없는 J을 채무자로 내세워 사업자금대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E와의 공모하에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갑 제3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성언주

별지

-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함께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취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행청구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택하여 기재한다.
- 3)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 본안전 항변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가 이 법원에서도 위 본안전 항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4) 원고는 1년 366일(윤년 포함)을 적용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0,153,055원을 산정하였는바(갑 제49호증), 원고의 계산에 의한다.
- 5) 원고의 계산에 의한다.
- 6) 1년 366일(윤년 포함)을 적용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0,153,055원을 산정한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
- 7) 원고의 계산에 의한다.
- 8)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고양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2018. 4. 25. '경매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E에 대한 고양지원 2018타채47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도 2018. 9. 4.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9) 원고는, H의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Y 대 27.8m²에 관하여 2013. 8. 1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Z, H 및 E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AA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다만, 2024. 9. 27.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6. 18.을 기준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된 13개 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2013. 9. 23. 근저당권소멸로 인하여 동시에 말소된 사실(다만, 서울 서대문구 Y 대지는 2022. 3.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23. 8.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M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N 아파트는 2022. 12.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AB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10. 2.을 기준으로 E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고 보이는 반면, E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33,967,213원 등을 부담하고 있다.

11) 원고는 피고 B의 기존 2021. 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V의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E의 채무초과 판단 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바,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4. 11. 피고 B 및 V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60584)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법원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기존 2021. 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V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